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가보훈등록증 부정사용 등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등〉

■ 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770, 2207772, 2207773, 2207775, 2207784, 2207791, 2207793호)

2025. 4.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최 기 도

목 차

I . 개요	1
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II . 검토의견	9
1.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근거 등 법률 상향	30
2. 국가보훈등록증 부정 사용 등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36

I. 개요

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안경위

- 1) 제안자 : 이현승의원 등 12인
- 2) 제안일 : 2025. 1. 23.
- 3) 회부일 : 2025. 1. 2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시행령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의 근거를 두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현행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경우 국가보훈등록증을 통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임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보훈등록증을 부정사용하여 부당하게 이용요금을 할인 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어 이를 부정사용한 사람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법률에 상향하여 정하는 한편, 국가보훈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국가보훈등록증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지원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게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4 신설 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안경위

- 1) 제안자 : 이헌승의원 등 12인
- 2) 제안일 : 2025. 1. 23.
- 3) 회부일 : 2025. 1. 2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시행령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의 근거를 두어 국가유공자가 현행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경우 국가보훈등록증을 통해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보훈등록증을 부정사용하여 부당하게 이용요금을 할인 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어 이를 부정사용한 사람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법률에 상향하여 정하는 한편, 국가보훈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국가보훈등록증의 부정사용을 막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이 국가유공자에게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8 신설 등).

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안경위

- 1) 제안자 : 이헌승의원 등 12인
- 2) 제안일 : 2025. 1. 23.
- 3) 회부일 : 2025. 1. 2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시행령은 중·장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한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의 근거를 두어 중·장기복무제대군인이 현행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경우 국가보훈등록증을 통해 중·장기복무제대군인임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보훈등록증을 부정사용하여 부당하게 이용요금을 할인 받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어 이를 부정사용한 사람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법률에 상향하여 정하는 한편,

국가보훈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국가보훈등록증의 부정사용을 막고, 중 · 장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이 중 · 장기복무제대군인에게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등).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안경위

- 1) 제안자 : 이현승의원 등 12인
- 2) 제안일 : 2025. 1. 23.
- 3) 회부일 : 2025. 1. 2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시행령은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의 근거를 두어 보훈보상대상자가 현행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경우 국가보훈등록증을 통해 보훈보상대상자임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보훈등록증을 부정사용하여 부당하게 이용요금을 할인 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어 이를 부정사용한 사람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법률에 상향하여 정하는 한편,

국가보훈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국가보훈등록증의 부정사용을 막고,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보훈보상대상자에게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등).

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안경위

- 1) 제안자 : 이헌승의원 등 12인
- 2) 제안일 : 2025. 1. 23.
- 3) 회부일 : 2025. 1. 2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시행령은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의 근거를 두어 5·18민주유공자가 현행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경우 국가보훈등록증을 통해 5·18민주유공자임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보훈등록증을 부정사용하여 부당하게 이용요금을 할인 받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어 이를 부정사용한 사람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법률에 상향하여 정하는 한편,

국가보훈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국가보훈등록증의 부정사용을 막고,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지원이 5·18민주유공자에게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등).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안경위

- 1) 제안자 : 이헌승의원 등 12인
- 2) 제안일 : 2025. 1. 23.
- 3) 회부일 : 2025. 1. 2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시행령은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의 근거를 두어 특수임무유공자가 현행법에 따른 예우를 받을 경우 국가보훈등록증을 통해 특수임무유공자임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보훈등록증을 부정사용하여 부당하게 이용요금을 할인 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어 이를 부정사용한 사람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법률에 상향하여 정하는 한편,

국가보훈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국가보훈등록증의 부정사용을 막고,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지원이 특수임무유공자에게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등).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안경위

- 1) 제안자 : 이헌승의원 등 12인
- 2) 제안일 : 2025. 1. 23.
- 3) 회부일 : 2025. 1. 2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시행령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의 근거를 두어 참전유공자가 고궁 등을 이용할 경우 국가보훈등록증을 통해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보훈부 자체 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국가보훈등록증을 부정사용하여 부당하게 이용요금을 할인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어 이를 부정사용한 사람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법률에 상향하여 정하는 한편,

국가보훈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국가보훈등록증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이 참전유공자에게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 신설 등).

Ⅲ. 검토의견

- 7건의 개정안¹⁾은 현재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근거 등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다른 사람의 국가보훈등록증을 사용한 사람, 국가보훈등록증을 양도·대여하거나 양도·대여 받은 사람, 국가보훈등록증과 유사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한 사람 등을 처벌하는 벌칙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의4(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중 제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에게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한다.

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국가보훈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국가보훈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국가보훈등록증이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성명, 생년월일 등 국가보훈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③ 국가보훈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국가보훈등록증과 유사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1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보훈등록증의 진위 또는 유효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⑤ 그 밖에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3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신 설>

다.

제31조의2(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재발급·진위확인 등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33조의2(벌칙) -----

-----.

1. 다른 사람의 국가보훈등록증을 사용하거나 제4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 국가보훈등록증을 사용한 사람. 다만, 제28조제3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은 제외한다.

2. 제4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국가보훈등록증을 양도·대여하거나 양도·대여를 받은 사람 및 유사한 명칭 또는 표시를 사용한 사람

<u>1. · 2.</u> (생 략) <u><신 설></u>	<u>3. · 4.</u>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u>5. 제27조제1항에 따라 일정 기간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그 기간 동안 정지된 지원을 받기 위하여 국가보훈등록증을 사용한 사람</u>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6조의8(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한다. 이 경우 선순위 유족이 제1호에 따른 국가유공자나 제2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공무원으로 등록된 사람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 유족이 아닌 모 또는 부에게도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한다.</u> <u>1. 제6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나 선순위 유족</u> <u>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u>

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공무원으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공무원으로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이나 선순위 유족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국가보훈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국가보훈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국가보훈등록증이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의 구분이 변경 또는 추가된 경우
3. 성명, 생년월일 등 국가보훈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국가보

<신 설>

제85조(벌칙) ① ~ ④ (생략)

<신 설>

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③ 국가보훈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국가보훈등록증과 유사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77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보훈등록증의 진위 또는 유효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⑤ 그 밖에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제77조의2(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재발급·진위확인 등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85조(벌칙)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u>1. 제6조의8제3항을 위반하여 국가보훈등록증을 양도·대여하거나 양도·대여를 받은 사람 및 유사한 명칭 또는 표시를 사용한 사람</u> <u>2. 다른 사람의 국가보훈등록증을 사용하거나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 국가보훈등록증을 사용한 사람. 다만, 제79조제3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은 제외한다.</u> <u>3. 제78조제1항에 따라 일정 기간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그 기간 동안 정지된 보상을 받기 위하여 국가보훈등록증을 활용한 사람</u>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4조의2(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u>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조제2항 전단에 따라 장기복무 제대군인 또는 중기복무 제대군인으로 결정된 사람에게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국가보훈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국가보훈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국가보훈등록증이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성명, 생년월일 등 국가보훈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③ 국가보훈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국가보훈등록증과 유사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6조의

<신 설>

제28조(벌칙) ① . ② (생략)

<신 설>

3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보훈등록증의 진위 또는 유효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⑤ 그 밖에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3(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재발급·진위확인 등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28조(벌칙)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국가보훈등록증을 양도·대여하거나 양도·대여를 받은 사람 및 유사한 명칭 또는 표시를 사용한 사람

2. 다른 사람의 국가보훈등록증

③ (생략)	을 사용하거나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대군인이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 국가보훈등록증을 사용한 사람. 다만 제25조제2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은 제외한다. 3. 제24조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이 정지된 기간 동안 국가보훈등록증을 사용한 사람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개정안
<신설>	제4조의2(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나 선순위 유족에게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한다. 이 경우 선순위 유족이 보훈보상대상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 유족이 아닌 모 또는 부에게도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국가보훈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국가보훈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국가보훈등록증이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성명, 생년월일 등 국가보훈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③ 국가보훈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국가보훈등록증과 유사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70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보훈등록증의 진위 또는 유효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⑤ 그 밖에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75조(벌칙) ① . ②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다.

제70조의2(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재발급·진위확인 등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75조(벌칙) ① . ②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국가보훈등록증을 양도·대여하거나 양도·대여를 받은 사람 및 유사한 명칭 또는 표시를 사용한 사람

2. 다른 사람의 국가보훈등록증을 사용하거나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 국가보훈등록증을 사용한 사람. 다만 제72조제3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은

<u><신 설></u>	<u>제외한다.</u> <u>3. 제71조제1항에 따라 일정 기간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그 기간 동안 정지된 보상을 받기 위하여 국가보훈등록증을 사용한 사람</u>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7조의2(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에게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한다. 이 경우 선순위 유족이 5·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 유족이 아닌 모 또는 부에게도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한다.</u> <u>② 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국가보훈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u>

<신 설>

할 수 있다.

1. 국가보훈등록증을 잃어버리
거나 국가보훈등록증이 훼손
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
우

2. 성명, 생년월일 등 국가보훈
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국가
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③ 국가보훈등록증은 양도하거
나 대여하지 못하며, 국가보훈
등록증과 유사한 명칭이나 표
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95조의
3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이용하
여 국가보훈등록증의 진위 또
는 유효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⑤ 그 밖에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
다.

제95조의3(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

제98조(벌칙) ① ~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신설>

1. · 2. (생략)

보훈등록증의 발급 · 재발급 · 진위확인 등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 · 운영할 수 있다.

제98조(벌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제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국가보훈등록증을 양도 · 대여하거나 양도 · 대여를 받은 사람 및 유사한 명칭 또는 표시를 사용한 사람

2. 다른 사람의 국가보훈등록증을 사용하거나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을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 국가보훈등록증을 사용한 사람. 다만, 제95조제3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은 제외한다.

3. · 4.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u><신 설></u> <u><신 설></u>	5. 제94조제1항에 따라 일정 기간 예우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그 기간 동안 정지된 예우를 받기 위하여 국가보훈등록증을 사용한 사람 6. 제94조제2항에 따라 예우가 정지된 기간 동안 국가보훈등록증을 이용한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6조의2(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에게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한다. 이 경우 선순위 유족이 특수임무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 유족이 아닌 모 또는 부에게도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국가보훈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국가보훈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국가보훈등록증이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성명, 생년월일 등 국가보훈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③ 국가보훈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국가보훈등록증과 유사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80조의3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보훈등록증의 진위 또는 유효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⑤ 그 밖에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제80조의3(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제82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신 설>

1. · 2. (생략)

<신 설>

운영)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재발급·진위확인 등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82조의2(벌칙) -----

-----.

1. 제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국가보훈등록증을 양도·대여하거나 양도·대여를 받은 사람 및 유사한 명칭 또는 표시를 사용한 사람

2. 다른 사람의 국가보훈등록증을 사용하거나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을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 국가보훈등록증을 사용한 사람. 다만, 제80조제3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은 제외한다.

3. · 4.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5. 제79조제1항에 따라 일정 기

<신 설>	간 예우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그 기간 동안 정지된 예우를 받기 위하여 국가보훈등록증을 사용한 사람 6. 제79조제2항에 따라 예우가 정지된 기간 동안 국가보훈등록증을 사용한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조의3(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에게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국가보훈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국가보훈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국가보훈등록증이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성명, 생년월일 등 국가보훈

<신 설> 제4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	<u>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u> ③ <u>국가보훈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국가보훈등록증과 유사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u> ④ <u>국가보훈부장관은 제39조의3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보훈등록증의 진위 또는 유효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u> ⑤ <u>그 밖에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u> <u>제39조의3(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재발급·진위확인 등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u> 제41조의2(벌칙) ----- ----- -----
---	---

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신 설>

1. · 2. (생 략)

<신 설>

-----.

1. 다른 사람의 국가보훈등록증
을 사용하거나 제5조의2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 법에 따
른 예우를 받을 권리가 소멸
된 이후에 국가보훈등록증을
사용한 사람. 다만, 제39조제2
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
자로 결정된 사람은 제외한
다.

2. 제5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국가보훈등록증을 양도·대여
하거나 양도·대여를 받은 사
람 및 유사한 명칭 또는 표시
를 사용한 사람

3. · 4.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5. 제38조제1항에 따라 일정 기
간 예우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그 기간 동안 정
지된 예우를 받기 위하여 국
가보훈등록증을 사용한 사람

1.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근거 등 법률 상향

□ 현행 「국가보훈 기본법」은 국가보훈부장관이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되었음을 증명하는 등록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²⁾ 이에 따라 각 보훈관계 법률의 시행령에서는 국가보훈등록증 및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정하고 있음.³⁾

□ 국가보훈등록증은 당사자가 국가보훈대상자로 인정받아 등록되어

2) 「국가보훈 기본법」 제21조의2(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등록증 발급)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되었음을 증명하는 등록증을 발급한다.

*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7개 보훈관계 법령에서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을 각 규정하고 있음.

* (예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한다. 이 경우 선순위 유족이 제1호에 따른 국가유공자나 제2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공무원으로 등록된 사람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 유족이 아닌 모 또는 부에게도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한다.

1.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나 선순위 유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공무원으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공무원으로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이나 선순위 유족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국가보훈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국가보훈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국가보훈등록증이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의 구분이 변경 또는 추가된 경우

3. 성명, 생년월일 등 국가보훈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재발급·관리 및 진위확인 등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재발급·관리 및 진위확인을 위하여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따른 신원 확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운영기반을 이용할 수 있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해당 호에 따른 사람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

2. 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공무원으로 등록된 사람이나 그 유족 또는 가족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있음을 증명하는 국가보훈신분증으로, 종래 보훈대상별로 발급하고 있던 15종의 신분증⁴⁾을 하나로 통합한 것임.

-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함으로써 고궁·공원 등의 국공립 시설물과 버스·철도·국내선 항공기 등의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⁵⁾ 금융 거래·인감신고·항공기 탑승 시 신원을 증명하는 공인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음.⁶⁾
- 또한, 국가보훈부는 보훈대상자의 생활편의를 위하여 실물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도입하여 발급하고 있음.

[표 1] 국가보훈등록증 개요



자료: 국가보훈부

- 4) 독립유공자증·유족증, 국가유공자증·유족증, 보훈보상대상자증·유족증, 국가보훈대상자등록증(지원대상자, 국내고엽제, 고엽제2세) 5·18민주유공자증·유족증, 특수임무유공자증·유족증, 제대군인증(장기·중기)
-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제101조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포함한다)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상군경 등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 규정」(국가보훈부 훈령)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송시설"이란 전상군경 등 수송시설 이용지원대상자가 이용운임을 무료 또는 할인받아 이용할 수 있는 버스(시내·농어촌·시외·고속), KTX·SRT 등 열차, 내항여객선과 지하철 및 국내선 항공기를 말한다.
제3조(수송시설별 이용지원대상자 및 지원내용 등)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송시설별 이용지원대상자 및 지원 내용은 별표와 같으며, 무료 또는 할인받아 이용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 등 증서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 6)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예우보상>국가보훈등록증 참조(<https://www.mpva.go.kr/mpva/contents.do?key=1784>)

- 국가보훈부는 2023년 6월부터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을 시작하여, 2025년 3월말 기준 약 25만 건의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하였음.

[표 2]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현황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3월말 기준)
전체 발급 건수	66,683건	152,166건	30,206건
신규 등록자 발급 건수	10,773건	18,336건	3,314건
기존 발급 교체 추정 건수*	55,910건	133,830건	26,892건

* 전체 발급 건수 중 신규등록자 발급 건수를 제외한 건수로 추정한 값임.

자료: 국가보훈부

- 그런데, 국가보훈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국가보훈등록증을 사용하여 부당하게 이용요금을 할인받는 행위 등과 같이 국가보훈등록증의 부정사용이 지속적으로 발생⁷⁾하고 있음에도, 현행 보훈관계 법령은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어, 각 보훈관계 법률에 부정사용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둘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각 법률에 국가보훈등록증의 부정사용 행위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 국가보훈등록증 통합 발급과 함께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이 도입되었는데, 현재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의 부정사용에 대하여는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부재한 상황이므로,⁸⁾ 이에 대한 벌칙규정

7) 2023년 88관광개발(주) 종합감사 결과보고서(국가보훈부, 2024. 1.) p.5; 국가유공자증 도용 철도 승차권 할인, 동아일보 2024. 11. 8.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41108/130388674/1>)

8) 현행 국가보훈관계 법률은 실물 국가보훈등록증에 대하여도 벌칙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실물 국가보훈등록증은 「형법」 상 문서에 해당하므로, 그 부정사용에 대하여는 「형법」에 따른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처벌이 가능함. 반면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은 「형법」 상 문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형법」 상

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죄형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하므로, 국가보훈등록증과 관련된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국가보훈등록증에 관한 사항도 법률에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필요한 입법조치로 판단됨.

- 또한, 현재 국가신분증으로 인정되고 있는 다른 신분증⁹⁾은 모두 해당 법률에서 발급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도, 발급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표 3] 국가신분증 발급 근거 규정

구분	외국인등록증 (출입국관리법)	자동차운전면허증 (도로교통법)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법)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법)
실물	제33조제1항	제85조제2항	제32조제1항	제24조제1항
모바일	제33조제6항	제85조의2제1항	제32조제2항 (25년 10월 시행 예정)	제24조의2제1항

자료: 국가보훈부

- 다만, 개정안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의 개념 및 효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유사 입법례¹⁰⁾를 참고하여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므로 개별 법률에서 처벌조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 9) 「국가신분증 운영표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조(적용 대상) ① 이 예규에서 정하는 기준은 행정청이 당사자들의 신원을 확인할 때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신분증(이하 "국가신분증"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1. 국가보훈등록증
2. 대한민국 여권
3. 외국인등록증
4. 자동차운전면허증
5.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6. 주민등록증
7. 청소년증

- 10) 「도로교통법」 제85조의2(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 및 운전면허증의 확인 등) ① 시·도경찰청장은 제85조, 제85조의3, 제86조, 제87조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모바일운전면허증(「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운전면허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추가로 발급할 수 있다.

* 「주민등록법」, 「출입국관리법」도 모바일 등록증과 실물 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근거에 관한 조항을 실물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근거와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¹¹⁾

[표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의견

개정안	수정의견
제6조의8(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u>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u> 을 발급한다. 이 경우 선순위 유족이 제1호에 따른 국가유공자나 제2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공무원으로 등록된 사람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 유족이 아닌 모 또는 부에게도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한다.	제6조의8(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 ①-- ----- ----- <u>국가보훈등록증</u> ----- ----- ----- ----- ----- -----.
1. 제6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나 선순위 유족	1. (개정안과 같음)
2. 「 <u>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u>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공무원으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공무원으로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이나 선순위 유족	2.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 ----- ----- ----- ----- ----- -----
<신 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국가보훈등록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국가보훈등록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로 발급할 수 있다.

※ 개정안 제4조의4 제2항부터 제5항은 제3항부터 제6항으로 이동하여, 수정의견에 맞추어 체계·자구를 수정하여야 할 것임.

11) 국가보훈부와 행정안전부도 같은 내용의 수정의견을 제출하였음.

□ 그 밖에,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근거 등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규정되는 경우, ① 등록증의 기재사항 변경 등으로 인한 등록증 재발급 시 또는 권리의 소멸 시 ‘등록증의 반납 의무’에 관한 사항도 법률에 함께 규정할 것인¹²⁾과 ② 현재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종전 국가유공자증 등의 효력 기한(2028년 6월 4일까지)¹³⁾ 법률의 부칙으로 상향하여 규정할 것인지를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국가보훈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법률로 상향 규정함으로써 국가신분증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부정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 벌칙규정을 신설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임.

○ 다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실물 국가보훈등록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각각 별개로 두는 수정의견을 제안하였음.¹⁴⁾

12) 「도로교통법」 제95조(운전면허증의 반납) ① 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받기 위하여 운전면허증을 제출한 때)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증을 반납(모바일운전면허증의 경우 전자적 반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1.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2.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리고 다시 발급받은 후 그 잃어버린 운전면허증을 찾은 경우
4. 5. (생략)

② 경찰공무원은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이 소지한 운전면허증을 직접 회수(모바일운전면허증의 경우 전자적 회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37조(외국인등록증의 반납 등) ② 제31조에 따라 등록을 한 외국인이 국민이 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13) 부칙 <대통령령 제33481호, 2023. 5. 23.>

제2조(국가유공자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1조제1항에 따라 발급된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유족증(「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종전의 제101조제1항을 적용하여 발급된 독립유공자증 및 독립유공자유족증을 포함한다)은 2028년 6월 4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14) 행정안전부도 동일한 취지의 수정의견을 제출하였음.

2. 국가보훈등록증 부정 사용 등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 현행 보훈관계 법률은 다른 사람의 국가보훈등록증을 사용한 행위 등에 대하여 별도의 벌칙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데, 국가보훈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여 이용요금을 할인받는 등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별 보훈법률에 이러한 행위 등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들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다만, 현행 법체계에서도 실물 국가보훈등록증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소가 그 직무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형법」상 공문서에 해당하므로, 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일단 진정하게 성립된 국가보훈등록증을 부정행사한 경우에는 「형법」상 공문서등의 위조·변조,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공문서 등의 부정행사죄가 성립될 수 있음.¹⁵⁾¹⁶⁾

□ 개정안은 ① 일단 진정하게 발급된 국가보훈등록증을 사용 권한이

15)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원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원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6) 국가유공자증의 위조 등에 관하여 공문서위조죄로 처벌한 사안에 관하여는 대전지방법원 2017. 3. 22. 선고 2016고단4650 판결 등. 한편, 국가유공자증을 부정행사하여 처벌된 사안과 관련하여, 신분 증명의 용도로 국가유공자증을 행사하여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처벌된 사례가 있으나(전주지방법원 2018노88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노60 판결 등),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사용권한과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공문서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본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성립하는 것이고, 국가유공자증의 본래 용도는 국가유공자로서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는 것이어서 단순히 신분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0도13344 판결)고 보아야 할 것임. 반면, 국가유공자증을 유공자 등에 대한 혜택을 받을 용도로 부정행사한 경우, 사기죄 또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국가유공자법위반죄(각 미수죄 포함)가 성립된 사례는 있으나 이외에 공문서부정행사죄를 별도로 구성하여 처벌된 사례는 발견하지 못하였음.

없는 사람이 사용하는 행위(부정사용),¹⁷⁾ ② 국가보훈등록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행위 및 이를 양도·대여받는 행위, ③ 국가보훈등록증과 유사한 명칭 또는 표시를 사용한 행위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 먼저, 국가보훈등록증의 부정사용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과 관련하여서는, 국가보훈등록증 통합 발급과 함께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이 도입되었는데,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은 실물 국가보훈등록증과 달리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한 반면,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그 사용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할 필요성은 실물 국가보훈등록증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부정사용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필요하므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판단됨.

○ 법원은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 문서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복사본’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는데,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은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없거나, 문자 등 시각적 방법에 의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으므로 「형법」상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음.¹⁸⁾

17) 다른 사람의 국가보훈등록증을 사용하는 행위, 보훈관계 법률에 따라 보상이 정지된 기간 중 또는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 국가보훈등록증을 사용한 행위를 말함.

18)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013 판결;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도19499 판결 등 참조.

- 그런데,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행위는 실물 국가보훈등록증의 부정사용 행위와 객체의 차이만 있을 뿐, 행위태양·보호법익 등은 동일하여 그 행위를 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위하여 명확한 처벌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관련하여, 모바일 신분증을 도입하였거나 도입할 예정인 다른 법률들도 모바일 신분증의 부정사용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별도로 규정하였다는 점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표 5] 모바일 신분증 부정사용에 관한 처벌 근거

구 분	규 정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법 제37조제1항제8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등(주민등록증 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운전면허증	(도로교통법 제150조제3호의3) 제9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 명의의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
외국인등록증	(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19호) 제33조의3을 위반한 사람 *제33조의3(외국인등록증 등의 채무이행 확보수단 제공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증이나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자기의 외국인등록증이나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 또는 이를 각각 알선하는 행위
장애인등록증 (도입 예정)	(장애인복지법 제87조제2호의2) 제32조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등록증(*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이 포함됨) 또는 그 복사본(**복사본이나 이미지파일)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 2025. 10. 23. 시행 예정

- 다음으로, 국가보훈등록증의 양도·대여 행위 및 국가보훈등록증과 유사한 명칭·표시의 사용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의 신설과 관련하여서는,

국가보훈등록증에 대한 공공의 신용 보호 필요성과 다른 국가신분증에 대한 유사 행위의 처벌에 관한 입법례를 참고하여 볼 때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국가보훈등록증의 양도·대여 행위는 타인의 국가보훈등록증을 사용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국가보훈등록증의 부정사용을 처벌하는 이상, 부정사용 예방을 위하여 그 이전 단계까지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이 과도한 것은 아닌지를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¹⁹⁾

[표 6] 국가신분증 양도·대여 행위 등에 대한 처벌규정 현황

구 분	규 정
운전면허증	(도로교통법 제150조제3호의2) 제85조제6항, 제106조제3항 또는 제107조제3항을 위반하여 <u>운전면허증</u> , 강사자격증 또는 기능검정원 자격증을 <u>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u>
외국인등록증	(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19호) 제33조의3을 위반한 사람 *제33조의3(외국인등록증 등의 채무이행 확보수단 제공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증이나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자기의 외국인등록증이나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u>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 또는 이를 각각 알선하는 행위</u>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법 제87조제2호) 제32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u>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를 받은 자 및 유사한 명칭 또는 표시를 사용한 자</u>

19) 일반적으로 특정 자격 증서의 양도·대여 행위 및 유사 명칭 등의 사용을 형사처벌하려는 취지는 일정한 능력 또는 기술적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해당 자격자에 대하여 공공의 신용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 국가보훈등록증은 특정한 능력 또는 기술적 요건을 갖춘 자임을 증명하려는 용도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한편, 형사처벌 규정은 죄형법정주의 및 형벌규정의 체계정당성 원리에 구속되므로, 개정안을 수용하여 입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하여 개정안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첫째, 죄형법정주의는 누구나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지을 수 있도록 구성요건이 명확할 것을 요구하며(명확성원칙), 그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유추·확장 해석할 수 없도록(유추해석금지의 원칙) 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처벌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고, 유사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는 처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개정안은 국가보훈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여 유공자 관련 혜택을 부당하게 받는 행위를 처벌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는바, 그 구성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국가보훈등록증은 유공자 등으로 등록되어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공문서의 부정행사는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공문서를 사용권한이 없는 자가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행사한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으로 제한할 필요²⁰⁾가 있다는 점에 비추어, 개정안의 문언과 같이 “국가보훈

20)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0도13344판결; 대법원 2001. 4. 19. 선고 2000도1985 전원합의체 판결 중 반대의견 참조.

등록증을 사용한 행위”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경우, 본래의 용도나 목적이 아닌 국가보훈등록증의 다른 사용 행위까지 처벌 범위가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본래 용도 외 다른 목적으로 국가보훈등록증을 행사한 경우에는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만을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개정안은 타인의 국가보훈등록증을 사용하게 되는 전 단계로 국가보훈등록증을 양도·대여하거나 양도·대여받은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부정사용에 대한 대여자의 주관적 인식 또는 목적이 전제되지 않은 단순한 국가보훈등록증 대여행위 모두를 처벌 대상으로 삼게 된다면 그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기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또는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와 같은 주관적 인식 여부 등을 구성요건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²¹⁾
- 그 밖에, ① 양도·대여행위를 처벌하려 한다면, 이와 죄질이 유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알선”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할 것인지와

21) [양도·대여·알선 금지 관련 입법례]

「도로교통법」 제85조(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은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3(외국인등록증 등의 채무이행 확보수단 제공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증이나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자기의 외국인등록증이나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 또는 이를 각각 알선하는 행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⑤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보훈등록증의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규정과 별개로 그 전제가 되는 의무부과 규정을 추가로 마련할 필요가 있는지²²⁾를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표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의견

개정안	수정의견
1. 제6조의8제3항을 위반하여 <u>국가보훈등록증을 양도·대여하거나 양도·대여를 받은 사람 및 유사한 명칭 또는 표시를 사용한 사람</u> 제6조의8(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 ③ 국가보훈등록증은 <u>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u>, 국가보훈등록증과 유사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다른 사람의 국가보훈등록증을 <u>사용하거나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 국가보훈등록증을 사용한 사람. 다만, 제79조제3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은 제외한다.</u>	1. 제6조의8제4항을 위반하여 <u>국가보훈등록증을 양도·대여하거나 양도·대여를 받은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u> 1의1. 제6조의8제5항을 위반하여 <u>국가보훈등록증과 유사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한 사람</u> 제6조의8(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 ③ 누구든지 <u>다른 사람의 국가보훈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상받을 권리가 소멸된 이후 또는 정지된 기간 동안 자신의 국가보훈등록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u> ④ 국가보훈등록증은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⑤ 국가보훈등록증과 유사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다른 사람의 국가보훈등록증을 <u>부정하게 사용한 사람</u> 2의2. 제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상받을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 <u>본인의 국가보훈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 다만, 제79조제3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된 이후에 본인의 국가보훈등록증을 사용한 사람은 제외한다.</u>

22) [처벌규정과 별도로 의무부과 규정을 두고 있는 입법례]

「도로교통법」 제92조(운전면허증 휴대 및 제시 등의 의무) ③ 누구든지 다른 사람 명의의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등록증 또는 그 복사본이나 이미지파일(이하 “복사본등”이라 한다)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	수정의견
3. 제78조제1항에 따라 일정 기간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그 기간 동안 정지된 보상을 받기 위하여 국가보훈등록증을 활용한 사람	3. 제78조제1항에 따라 일정 기간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이후에 그 기간 동안 정지된 보상을 받기 위하여 본인의 국가보훈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

- 또한, 벌칙규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의 유추·확장해석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개정안의 입법목적상 처벌하려는 행위가 그 대상에 포섭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유추적용하여 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처벌 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처벌이 불가능한 공백이 발생하는지를 검토하여 이를 개정안에 추가할 것인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대법원은 촬영 등을 통하여 생성한 신분증의 이미지 파일 또는 이미지는 시각적 가독성이 없거나 계속적으로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형법」상 문서에 해당하지 않고, 신분증의 특정된 용법의 행사는 신분증 그 자체를 제시하는 것이어서 부정행사에 관한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데,²³⁾ 이에 따르면, 국가보훈등록증의 부정사용에 관한 벌칙규정만을 둘 경우 국가보훈등록증의 이미지 파일 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부재한 상황이 될 수 있으므로, 이미지 파일의 부정 사용 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추가할 것인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음.

23)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8도2560 판결(운전면허증의 이미지 파일을 보여주는 행위);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도13861 판결(주민등록증의 이미지 파일을 보여주는 행위) 등.

- 또한, 보훈대상자는 철도 승차권 예매 앱에서 보훈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승차권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보훈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은 유공자 관련 혜택을 부정하게 제공받게 된다는 점에서 등록증 자체의 부정행사와 그 불법의 결과가 동일하나, 이를 국가보훈등록증 자체를 행사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 부정행사에 관한 죄가 성립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벌칙규정을 추가할 것인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음.²⁴⁾

[표 8] 이미지 및 등록번호 부정사용 처벌에 관한 입법례

구 분	규 정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법 제37조제1항) 8의2. <u>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등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u> 10. <u>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u> . 다만,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여권	(여권법 제25조) 1. 제16조제2호(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u>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 등(여권 등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포함한다)</u> 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
외국인등록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19. 제33조의3을 위반한 사람 *제33조의3(외국인등록증 등의 채무이행 확보수단 제공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u>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u>
장애인등록증 (도입 예정)	(장애인복지법 제87조제2호의2) 제32조제5항을 위반하여 <u>다른 사람의 등록증 또는 그 복사본(**복사본이나 이미지파일)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u> ※ 2025. 10. 23. 시행 예정

※ 운전면허증 이미지 파일 부정사용에 관하여는 관련 의안이 발의(한정애의원 대표발의)되어, 소관 상임 위원회에 계류 중임.

24) 등록번호의 부정사용을 처벌하는 입법례로는 「주민등록법」(주민등록번호), 「출입국관리법」(외국인등록번호)가 있음.

- 한편, 국가보훈등록증 도입 이전에 보훈대상자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되었던 유공자증 등도 2028년 6월 4일까지는 효력이 있는데, 개정안에 따라 국가보훈등록증을 양도·대여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될 경우, 이를 유공자증 등을 양도·대여하는 행위까지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어, 결국 유공자증 등을 객체로 한 처벌 규정이 부재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공자증 등을 양도·대여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별도로 둘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²⁵⁾
- 그 밖에, 국가보훈부 및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신분증을 위·변조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어²⁶⁾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안의 벌칙규정에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의 위·변조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여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표 9] 국가보훈부 및 행정안전부 처벌대상 행위 추가의견

구분	추가 처벌 대상 행위
국가보훈부, 행정안전부	① 제6조의8제2항에 따른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의 기재사항 또는 표시방법을 조작한 자와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조작된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제공·전달 또는 사용한 사람
	② 제6조의8제2항에 따른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으로 오인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이미지 파일 또는 전자문서를 만든 자와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해당 이미지 파일 또는 전자문서를 제공·전달 또는 사용한 사람

자료: 국가보훈부

25) 국가유공자증 등은 실물만 발급되었으므로, 이를 부정하게 사용한 행위는 「형법」 상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처벌 규정이 부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26) "3만 원이면 2분 안에"...모바일신분증 위조 성행?(SBS 뉴스, 2025. 1. 6.), "3만원 주면 2분내 제작"...'위조 모바일 신분증' 불법광고 기승(연합뉴스, 2025. 1. 5.) 등

□ 둘째, 법정형과 관련하여서는, 형벌규정의 체계정당성 원리는 죄질과 보호법익이 유사한 범죄 간에는 법정형의 균형성이 유지될 것을 요구하는 바, 개정안은 규율하고자 하는 각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비교하여 개정안의 법정형이 이들과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개정안이 입법된다면, 실물 국가보훈등록증 부정사용 행위는 1개의 행위가 「형법」상 공문서부정행사죄와 개별 보훈관계 법률 위반죄에 해당하게 되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²⁷⁾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사실은 가장 중한 죄로 처벌하여야 하므로²⁸⁾ 실물 국가보훈등록증 부정사용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처벌하게 되는 반면,²⁹⁾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부정사용한 경우에는 보훈관계 법률 위반죄만 성립하게 되어 개정안에 따른 법정형을 기준으로 처벌하게 되므로, 결국 두 행위에 적용되는 법정형이 달라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불법대여는 그 죄질이 부정사용과 상당부분 유사하므로 법정형을 통일할 필요가 없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³⁰⁾이 있음을 고려하여, 부정사용에 관한 법정형을 조정한다면 양도·대여 등의

27) 공문서부정행사죄와 개별 법률에 따른 신분증 부정사용 위반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노1735 판결(대법원 2016도563 판결로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확정)

28)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9) 형의 경중의 비교는 원칙적으로 법정형을 표준으로 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더 경한 형라고 판단한 대법원 92도2194 판결 참조.

3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26445)」에 대한 체계자구검토보고서 중 법무부 의견

행위에 대한 법정형도 함께 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개정안에 따라 벌칙규정을 신설한다면 유사 위반행위의 법정형을 참고하여 각 범죄 간 법정형의 균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개정안의 법정형이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표 10] 부정사용 등 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관련 법률 처벌 수준

구분	범죄 행위	법정형
형법	공문서 등 부정행사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주민등록법	주민등록증, 모바일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모바일운전면허증 부정사용 운전면허증 대여, 알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등록증, 모바일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번호 부정사용 외국인등록증, 모바일외국인등록증 제공 및 알선행위 외국인등록번호 알선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등록증 부정사용 장애인등록증 양도·대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그 밖에, 7건의 개정안 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독립유공자법”이라 함)에 대한 개정안은 발의되어 있지 않은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함)의 개정안에 따른 벌칙규정까지 독립유공자법이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와 별개로 독립유공자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추가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현재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 근거하여³¹⁾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라 각 법률에 발급 근거 및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경우,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근거 및 처벌 등에 관한 사항은 신설되는 국가유공자법 규정을 준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³²⁾
- 독립유공자법 제42조는 포괄적 준용방식을 택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포괄적 준용방식에 의하여 벌칙규정까지 준용하더라도 일반국민 누구나 벌칙규정의 준용 여부를 예견할 수 있다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는 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나, 독립유공자법의 준용 규정 문언상(“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할 때.....”) 그 준용범위가 예우에 관한 부분만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등 준용 여부가 불명확하다고 보여질 우려가 있는 점³³⁾에 비추어, 수범자의

31)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적용)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예우를 함에 있어 이 영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적용한다.

32)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할 때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33) “예우”란 예의를 지키어 정중하게 대우함을 의미(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하므로, 벌칙규정까지 준용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관련하여 독립유공자법 제42조의 준용규정과 동일한 내용의 준용규정인 독립유공자법 시행령 제41조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99조(누우침 심사 시 해당자의 출석을 전제)가 준용되는지에 대하여는 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23구단13658, 현재 수원고등법원 항소심(2024누14131) 진행 중]에서 이를 부정한 판례*가 있음

* 수원지방법원 2024. 7. 19. 선고 2023구단13658

“(전략) 피고는 독립유공자법 제39조 제3항에 정한 누우침 정도에 대한 심사는 대상자가 생존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규정이기 때문에 이미 사망한 고인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누우침 정도를 심사하는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국가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9조 제1항이 해당자의 생존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그 근거로 들고 있으나, 독립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서는 등록신청을 받을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도록 하고 있을 뿐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을 준용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들고 있지 않을 뿐 아니

예측가능성과 이해편의를 고려할 때 독립유공자법에도 별도의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국가보훈부는 별칙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가보훈등록증의 부정 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 다만, 상술한 바와 같이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의 위·변조 관련 행위를 처벌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처벌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수정의견을 제출하였음.

- 이에 대하여는, 국가보훈등록증을 부정하게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함으로써 공무집행(등록증 발급업무)을 방해하여야 할 것인데, 이 경우 「형법」상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동일한 행위에 적용될 수 있는 범죄구성요건이 중복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개별 법률에 별도로 이러한 처벌 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지를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12

라(독립유공자법 시행령 제41조에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예우를 함에 있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후략)”